

# 분쟁 해결

- Dispute Resoultion -

제2호

2016년 2월

사단법인 한국조정학회

## 발 간 사

사단법인 한국조정학회는 2009. 9. 26. ‘조정제도의 이론과 실무에 관한 연구와 토론을 통하여 학문적 발전과 조정제도 개선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창립되었습니다. 창립 이후 2011. 6.에 학회지인 『분쟁해결』 창간호를 출간하였으며, 현재까지 17회의 학술 대회를 통하여 조정조서의 효력 등 법적 문제는 물론 조정제도와 조정기법 향상을 위한 학문과 실무 양 방면의 연구와 토론을 계속하여 왔습니다. 이번에 제2호 학회지를 창간함에 있어 많은 도움과 관심을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정학회는 자체적인 학술대회도 주최하였지만 사법부나 행정기관은 물론 조정유관 기관과도 공동 또는 후원을 받아 운영하여 왔습니다.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한 유관기관으로는 대법원, 한국법학원, 대한상사중재원, 국가인권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등이고, 고려대학교, 중앙대학교, 성균관대학교 등과도 학술대회를 공동으로 열었습니다. 아울러 대한상사중재원과 매년 2회 조정전문가 과정 교육도 시행하였으며, 소수의 학회 회원들끼리 연구 내용을 발표하는 조정스타디 모임도 운영하여 왔습니다.

무릇, 모든 제도와 법은 질서의 유지, 정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며, 아울러 우리 인간 삶의 향상에 기여하고 다수의 복리민복을 도모하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신속한 거래가 중시되는데 비해,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법률문화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거래를 저해하는 분쟁을 간소한 절차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상호 양해를 통하여 조리를 바탕으로 실정에 맞게 해결하기 위한 민사조정법이 제정된 것입니다.

그러나 민사조정법은 사법부의 입장에서 수많은 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되어 왔고, 조정을 주재하는 기관도 대부분은 판단기관인 수소법원이었으며, 조정기관의 직권을 강화하는 것으로 변모되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사자 스스로 중립적인 제3자의 도움을 받아 주도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조정 본래의 모습을 갖추어나가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2009년 민사조정법 개정으로 조정담당판사의 권한을 부여한 상임조정위원회에 의한 조정을 시도하기 위하여 법원조정센터라는 법원 부속형 조정기관이 만들어졌고, 그 후 초기조정제도의 시범적 운용, 외부연계기관에 의한 조정제도 등의 시행으로 다양한 조정제도의 기틀이 마련되었습니다.

한국조정학회는 이러한 변화의 시점에서 조정을 함에 있어서는 인간의 다양한 생각과 모습들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전제 하에 심리학, 뇌 과학, 인문학 등에 관한 여러 가지 연구와 토론을 시도하였고, 이러한 것에 기초하여 합리적인 조정제도의 설정을 제시하였으며, 앞으로 필요한 한국 조정제도의 청사진을 마련하고자 노력하여 왔습니다. 우리 학회가 조정에 관한 법률적인 문제만을 다루지 않고 그 외연을 확대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조정법학회라고 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ADR이 재판을 대체하는 정도가 아니라 바야흐로 분쟁을 해결하는 본령으로서 DR(Dispute Resolution)로 기능하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대한 연구와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첫째, 우리나라 조정제도의 연혁에 대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소송의 바다에 빠져있지만 전통적인 유교사회에서는 마을의 원로에 의한 조정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았을 것이므로 조정이 서양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우리 전통 사회의 근간이었던 점을 밝힘으로써 조정을 통한 분쟁해결이라는 목표점을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조정 적합성이나 조정 회부의 타당성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조정절차를 진행하는 당사자들이 의욕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조기조정이나 외부 연계기관 조정절차에 관한 제도적 뒷받침도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제도들에 관한 보완과 뚜렷한 법적 근거를 갖추으로써 조정의 효율성을 더 확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넷째, 수소법원 조정보다는 중립적인 제3자에 의한 조정 본래의 취지를 계속 살려 나가되, 조정인에 대한 교육과 평가를 강조하여야 하고, 이 과정에서 해당 전문 분야는 물론 심리학 등 조정 기법에 관한 교육을 강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국조정학회의 제2호 학회지 발간에 즈음하여 앞으로도 조정제도 및 조정기법 향상을 위한 연구와 토론을 계속하여야 할 것이며, 본 학회지가 조정문화의 선진적 연착륙에 일조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2016. 2. 17.

사단법인 한국조정학회  
회장 부 구 육

## ■ 목 차 ■

<b>발간사    부구육</b> .....	3
■ 민사분쟁해결에서 조정의 영향과 민사사건 배당에 관한 제안   황덕남 .....	7
■ 민주주의와 갈등조정   문용갑 .....	26
■ 감정(鑑定)이 의료분쟁 조정(調停)에 미치는 영향   윤성철 .....	51
■ 분쟁해결론의 발전방향과 조정에서의 교착상태 해결방법   함영주 .....	62
■ 갈등조정 심리학 - 민·형사 조정의 실제   노영희 .....	103
■ 법적 분쟁 당사자에 대한 조정과 협상의 커뮤니케이션   조홍준 .....	117
■ 공유물분할의 조정과 물건변동의 시기   문광섭 .....	161
■ 법원의 ADR과 연계방안   유병현 .....	174
■ 미국의 민간형 ADR의 운영에 대한 실태 조사, JAMS 방문 인터뷰   함영주 .....	223
<b>부 록</b> .....	271
• 사단법인 한국조정학회 정관 .....	273
• 한국조정학회 2011년~2015년 활동내역 .....	279
• 한국조정학회 편집위원회 규정 .....	284
• 한국조정학회 심사위원회 규정 .....	286
• 한국조정학회 연구윤리 규정 .....	288
• 논문투고규정 .....	290
• 전국 상임조정위원 명단 .....	293
• 한국조정학회 임원명단 .....	295